

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4. 24(월)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2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4월 20일(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23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종 연)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현행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안 제5조).

-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안 제7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 검토
-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및 해촉 조치를 취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종 목)

가. 본 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제시를 통해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위험요인,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 현지조사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용역 등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관련
 -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위원장), 안 제13조(간사)를 종합하면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위원, 복구지원담당이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조례 표준안에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간사는 자연재해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이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실·국이 있는 자치단체를 표준으로 하여 표준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 조직형태로 볼 때 표준안의 자연재해 담당국장은 자연재해담당과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토위원회의 기능이 서면 검토가 원칙이고 방재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만큼

군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군수보다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해업무 담당주사는 간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2조, 안 제4조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u>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u>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삭제></p> <p>.....</p> <p>.....</p> <p>.....</p> <p>.....</p>
<p>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u>위원장은 부군수가</u> 된다.</p> <p>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u>사무를 총괄한다.</u></p> <p>③위원장이 <u>위원회의</u>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위원장) ①.....<u>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u>.....</p> <p>②.....</p> <p><u>그 사무를 총괄한다.</u></p> <p>③.....<u>검토위원회</u>.....</p> <p>.....</p> <p>.....</p>

○ 안 제3조(위촉장의 교부)와 관련

-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한편, 제2조에서는 위원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부장과 위원장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고 서로 상충되며,

단순히 위촉장 교부만을 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제3조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3조 관련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 ~ 제14조 (생략)	제3조 ~ 제13조 (현행 제4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제6조.....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1조(회의록) ①제4조.....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기타 불명확한 표현의 정리

-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에서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운영주체인 위원장은 회의에서 빠져 있게 되어 논란이 예상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14조 수당과 여비에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수당·여비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 안 제14조 수정의견

원 안	수 정 의 견
<p>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u>위원장이</u>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제4조(검토위원회 운영) ①.....</p> <p>.....</p> <p>.....<u>위원장과 위원장이</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의</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에 참석한</u>.....</p> <p>.....</p> <p>.....</p> <p>.....</p>

라. 종합적으로

-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 심의기능의 강화로 무분별한 개발억제와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임.
- 본 조례에 의한 검토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각종 사업허가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점이 있고, 집행부의 추정에 의하면 향후 위원회의 연간 처리건수가 50건 정도로 예상되고 또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등 규제신설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임
-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늦어도 지난해 연말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사업 중 8건이나 검토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끝으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자 : 김 정 회 의원

나. 수정이유

-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불명확하고 통일되지 못한 일부 자구의 정리 등

다. 수정 주요내용

-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 안 제3조를 삭제.
- 안 제4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안 제3조 내지 제13조로 함
- 안 제4조 제1항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다음에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항 “사무”를 “그 사무”로 함.
- 안 제12조제1항 “간사”를 “총무”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14조를 각각 안 제3조 내지 안 제13조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검토위원회의 위원장” 다음에 “(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를 “그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검토위원회”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항 중 “간사”를 “총무”로 한다.

안 제13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항 중 “간사”를 “총무”로 한다.

안 제1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삭 제>
제4조 ~ 제14조 (생략)	제3조 ~ 제13조 (현행 제4조 내지 제14조와 같음)
제4조(위원장) ① <u>검토위원회의 위원장</u> 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u>위원회의</u>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장) ① <u>검토위원회의 위원장</u>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② <u>그 사무</u> ③ <u>검토위원회</u>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u>위원장</u> 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4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u>위원장과 위원장이</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u>제6조</u>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u>간사</u> 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u>간사</u> 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제4조 <u>총무</u> 1. ~ 7. (현행과 같음) ② <u>총무</u>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u> 1인을 둔다. ② <u>간사</u> 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u>간사</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 4. (생략)	제13조(총무) ① 제4조 <u>총무</u> ② <u>총무</u> ③ <u>총무</u> 1 ~ 7.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의</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에 참석한</u>